

8.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

심 사 보 고 서

가. 시민행정위원회

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 . 12 . 8 .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1월 21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24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3. 12. 8)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병 하, 생활복지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- 2003회계연도 예산 중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(세출예산의 이월)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여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 산 규 모		
회 계 별		예 산 액	기정예산	간주처리
	합 계	210,670,732	206,121,506	4,549,226
	일 반 회 계	180,648,761	177,350,535	3,298,226
	특 별 회 계	30,021,971	28,770,971	1,251,000
	의료급여	80,337	80,337	0
	주 차 장	29,941,634	28,690,634	1,251,00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략)

5. 토론 요지 (없음)

6. 수정안의 요지 (없음)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

나. 재무건설위원회

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 . 12 . 9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재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1월 21일 ·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24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2차~제3차(2003.12. 9~12.10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 명 식, 건설교통국장 김 연 수)

가. 제안이유

- 2003회계연도 예산 중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(세출예산의 이월)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여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☐ 총예산규모

(단위:천원)

구 분		기정예산	금회 간주처리(14회~18회)	예산액
합 계		206,121,506	4,549,226	210,670,732
일반회계		177,350,535	3,298,226	180,648,761
특별회계	소 계	28,770,971	1,251,000	30,021,971
	의료급여	80,337	0	80,337
	주차장	28,690,634	1,251,000	29,941,634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보고자 : 전문위원 정 성 수)

□ 총예산규모

(단위:천원)

구 분		기정예산	금회 간주처리(14회~18회)	예산액
합 계		206,121,506	4,549,226	210,670,732
일반회계		177,350,535	3,298,226	180,648,761
특별회계	소 계	28,770,971	1,251,000	30,021,971
	의료급여	80,337	0	80,337
	주차장	28,690,634	1,251,000	29,941,634

□ 명시이월 예산규모

(단위:천원)

위 원 회 명	계		일반회계		특별회계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합 계	26	16,273,285	24	14,217,542	2	2,055,743
시민행정위원회	15	8,259,474	15	8,259,474	.	
재무건설위원회	11	8,013,811	9	5,958,068	2	2,055,743

□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

【일반회계】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예산과목			예산액	명시이월액	이 월 사 유
	세항	세세항	세목			
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 담장개방	녹지 관리	자체 사업	시설비	150,000	141,175	·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 설계용역은 완료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에 집행 곤란
무악동 45-83 ~45-20간 도로개설공사	도로 건설	자체 사업	시설비	300,000	300,000	· 무악현대APT 주민의 토지사용승 낙서 청구 불가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이행기간 장기 소요
홍파동 80번지 도로개설공사	도로 건설	자체 사업	시설비	50,000	50,000	· 뉴타운 사업신청지구 내로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보류된 상태이 며 지구결정 여부에 따라 검토계획
충신동198~170간 도로개설공사	도로 건설	자체 사업	시설비	1,200,000	848,000	· 당초 및 제2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 으로 보상협의를 장기간 소요
창성동109~131간 도로개설공사	도로 건설	자체 사업	시설비	525,000	525,000	·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보 상협의를 장기간 소요
돈의동~묘동 184간 도로개설 공사	도로 건설	자체 사업	시설비	300,000	300,000	·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보 상협의를 장기간 소요

사 업 명	예산과목			예산액	명시이월액	이 월 사 유
	세항	세세항	세목			
이화동90 ~ 중신 동57간 도로개설 개설공사	도로 건설	자체 사업	시설비	700,000	700,000	·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보 상협약에 장기간 소요
종로6가 33-2 ~197간 도로개설 공사	도로 건설	자체 사업	시설비	500,000	500,000	·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보 상협약에 장기간 소요
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	도로 건설	자체 사업	시설비	2,700,000	2,593,893	· 제7회 간주처리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절대공기 부 족

【특별회계】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예산과목			예산액	명시이월액	이 월 사 유
	세항	세세항	세목			
이화동별관 리모델링	교통 관리	자체 사업	시설비	819,503	804,743	· 당초 및 제2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완 료한 상태로 2004년 상반기 완 료 예정
이화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	주차장 건설	보조 사업	시설비	1,251,000	1,251,000	· 제15회 간주처리된 예산으로 주 차장 건립 후 감정평가에 의해 사업비 지출하기로 주차조합과 협약하여 2004년에 공사비 집행 예정

4. 검토의견

- ☐ 금회 추경은 당초 및 1~2회 추경시 기 의결된 예산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 등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안될 경우 예산이 반납될 수 있어 안전하게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기존예산의 변동 없이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임
- ☐ 다만 금회 명시이월 승인 요구된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담장개방사업 예산은 금번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현재 시비 지원금으로 추진 중인 대학로 걷고싶은거리 조성계획과 중복된 것을 이유로 시비예산 27억에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로부터 구비 예산집행이 중지 요구된 예산임. 따라서 이의 처리방법으로는 기 집행된 실시설계용역비 882만 5,000원을 제외한 1억 4,117만 5,000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승인하여 내년도에 타사업으로 전용하는 방법이 있고,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이를 불승인하여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내년도에 타 사업 추진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으나, 예산을 특정사업으로 전용하는 것보다는 불용처리하여 불특정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조 기 태 위원의 수정안 동의
 - 일반회계 세출예산 : 수정가결
 - 특별회계 세출예산 : 원안가결

6. 수정안의 요지

- 일반회계
 -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담장개방 141,175,000원 불승인

7. 심 사 결 과

- 일반회계 : 축조심사결과 수정(안)은 수정(안)대로, 기타(안)은 원안가결
- 특별회계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